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회 귀종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일반업무회계 및 법인이 설립한 성서대학교 교비회계의 2023년 2월 28일과 2022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와 합산자금계산서 및 합산운영계산서, 2023년 2월 28일과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합산대차대조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및 법인이 설립한 한국성서대학교의 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8일과 2022년 2월 28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자금수지와 재무성과와 2023년 2월 28일과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기타법규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학교법인 및 설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기준 및 유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금액과 공시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감사보고서의 열람에 의하여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인 의견

우리의 확인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607 호

가립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박 개 성



2023년 4월 1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1. 학교법인	①학교법인명	한국복음주의학원		②이사장 성명	반종원
	③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④전화번호	02-950-5435		⑤FAX	02-950-5437
	⑥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 설치·경영 대학교	⑦대학교명	한국성서대학교		⑧총장 성명	강우정
	⑨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4길 32			
	⑩전화번호	02-950-5428		⑪FAX	02-950-5411
	⑫입학정원	224명	⑬기타 동 법인 설치 ·경영 학교명	해당사항 없음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구 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볼임)
⑭감사의견	적정의견
⑮한정사항	해당없음
⑯특기사항	해당없음
⑰기타⑮⑯이 외 의 중점 확인사항 관련 위반사항	해당없음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18.06.29),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가 립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박 개 성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장 반종원 귀하

첨부서류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교육부 고시 제2018-159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외부감사결과 집계표 등(별지 제4호 서식)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회계연도	2022	학교법인명	한국복음주의학원	학교명	한국성서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여부				
	법인에 속하는 회계		학교에 속하는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	해당사항 없음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세부 내역

회계연도	2022	학교법인명	한국복음주의학원	학교명	한국성서대학교
확인 사항	위반내용	관련 법령	위반 금액 (단위:천원)		
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	-	사립 학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였는지 여부 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	-	사립 학교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3.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	-		
4. 사학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	-		
5.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	-	사립 학교법 제32조의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1조	-		
6.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		
7. 그 밖에 외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	-	-	
(-) 건					

(별지 제4호 서식)

회계연도 2022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결과 보고사항 짐계표	학교법인명 대학교명		한국복음주의학원 한국성서대학교			
		법인회계 일반업무	수익사업	교비	부속병원	합계	
확인 항목		위 반 금 액 (단위 : 천원)					
합 계		-	-	-	해당사항 없음	-	
① 관할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여부(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 [별지 제4의1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② 재산 취득 시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4조) [별지 제4의1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③ 학교법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목적 이외에 법인 임원 등의 개인 목적 사용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④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교육부장관의 승인 없이 또는 승인액을 초과하여 교비회계에서 부담 여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69조의3) [별지 제4의2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⑤ 학교법인의 법인세 환급금(교비회계 자금예치로 발생한 이자소득세)을 당해 학교에 미전출 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법인세법 제62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⑥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및 수익금의 교비회계전 출 여부 등 (대학설립운영규정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 [별지 제4의2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⑦ 학교법인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사용여부(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⑧ 자금의 횡령·유용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또는 부속병원의 임상교원 인건비를 법인으로 직접 전출여부(사립학교법제29조제6항) [별지 제4의3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⑩ 이월금 구분(사고·명시·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사립학교법 제32조의3) [별지 제4의3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⑪ 시설 공사 및 구매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35조) [별지 제4의3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⑫ 사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CP) 매입 여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33조) [별지 제4의4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⑬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감사사항 [별지 제4의5호 서식]		-	-	-	해당사항 없음	-	